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1.6.	2009. 11.9.	2009. 11.13	2009. 11.13	지역개발과장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1.6.	2009. 11.9.	2009. 11.13	2009. 11.13	재난관리과장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1.6.	2009. 11.9.	2009. 11.13	2009. 11.13	상수도과장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009. 11.6.	2009. 11.9.	2009. 11.13	2009. 11.13	상수도과장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08. 11.27	2008. 11.27	2008. 12.22 2009. 11.13	2009. 11.13	교통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행사의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수도법」 및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시의 조례를 정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6년 충청북도의 방침에 따라 '97년 조례 제정 추진
- 계곡수의 관리는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하여 관리 가능
-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5]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4조의2)
- 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4조의3)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4조의 4)
- 라.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완화(안 제58조)
- 마.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62조의 2)

[2]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제6호)
 -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범위 설정
- 나. 실무위원회의 기능 보강(안 제9조)

[3]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조례 제명 변경
 -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 충주시 소규모수도 시설관리조례
- 나. 간이급수시설 폐지 허가자 변경 : 도지사 ⇒ 시장 (안 제11조)
- 다. 간이급수시설 요금징수 결정절차 완화(안 제13조)
- 라. 간이급수시설 점검주기 증대 : 년 2회 ⇒ 분기 1회 (안 제7조)
- 마. 수질검사결과 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 3년 ⇒ 원수 5년, 정수3년 (안 제6조)
- 바. 간이급수시설 관리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안 제17조, 제24조)

[4]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폐지

[5]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 충주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 (안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신설되는 조항인 안 제54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증축이 곤란했던 기존 공장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공장 증축에 따른 고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8조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의 완화는
부지확보 등의 기반구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1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2]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촌자원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1,200여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비롯해서 12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음
- 그 동안 지역축제에서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05년 “상주자전거축제”(사망 11명, 부상 162명)와
'09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사망 7명, 부상 81명)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사료됨

③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 수질검사 보존기한 및 용어의 변경 등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점검을 연 2회이상에서 분기 1회이상
으로 강화하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에서 요금징수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던
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17조 제5항, 제6항 및 제20조, 제21조를 삭제하여
협의회 구성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④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 조례안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던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제정되었던 본 조례는 도내 12개 시·군 중 우리 시를 비롯하여 청천 등 9개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영동군’이 유일한 실정임
- 이렇듯 대다수의 자체에서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관리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존재하는 바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5%에 이르고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한다고 함
-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한 바, 이 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이나, 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 추진해야 할 내용의 대강을 보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 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행(인구 10만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상버스 2대, 특별교통수단 4대 분량
총 3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있음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기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 조례안을 보면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분야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등과 같은 도로분야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에 ‘도로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분야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도로과장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내용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1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50퍼센트로 규정한 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휠택시의 경우와 같이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신청에 의하거나,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와 같이 노선을 정하게 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2km당 1,800원이고

초과하는 요금이 175m당 1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요금은

동지역에서는 시내버스정도의 요금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위탁시에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동시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위탁운영시에는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차량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수탁자에게 차량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의 교통약자도 전체인구의 23%나 된다고 함
우리나라 사회가 향후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때 고령에 의한 교통약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책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 조례는 그 바탕이 되는 규정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 조례개정시 특혜 시비의 가능성은?
답변 :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

(2) 질의 : 시행령 개정은?
답변 : '09년 7월

②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답변 없음

③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간이급수시설 폐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봉인, 전기차단 등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 관정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4]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질의 :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구는?

답변 : 순수하게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곳은 31개소임

(2) 질의 : 명예감시원 제도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가?

답변 : 초창기에는 실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적이 전혀 없음

(3) 질의 : 명예감시원 구성은?

답변 : 계곡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4) 질의 : 폐지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 「산림법」 등 개별법으로도 규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5]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질의 : 택시업계의 반발, 중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개인택시를 장애인택시로 변경하는 문제가
중앙에서 검토중임

(2) 질의 : 일반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할 우려가 있는데?

답변 : 다소의 우려는 있으나 외관상 일반차량과는 구별됨

(3) 질의 :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답변 : 시 단위는 80% 이상 운영중임

(4) 질의 : 조례 통과시 몇 대로 운영할 예정인가?

답변 : 용역결과 적정대수는 6대임. 일단 2대로 운영하고 수요를 보면서 운영할 계획임

(5) 질의 : 6대로 운영할 시 연간 소요 예산은?

답변 : 2억 정도 소요 예정임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